

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9월 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9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9월 11일

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회 식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준공예정에 따라 이용료,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고, 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추가·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관리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용료와 이용료의 구분을 명확히 함(안 제2조제7호, 제8호, 제9조제2항)
-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9호, 제10호)

- 신축 복합스포츠센터의 이용료, 이용시간 등 신설(안 별표1~별표3)
-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추가(안 별표3, 별표7)
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 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-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의 준공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조례상 전문체육시설의 범위에 복합스포츠센터를 추가하고 이용료,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며,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및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복합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전용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등 기존 체육시설 대비 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책정하였으며,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이용료는 현재 공공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 및 지역 내 사설볼링장 이용요금을 비교·분석하여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국가보훈처의 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’에 따라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해 체육시설 이용료를 50% 감면하도록 신설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감면이 누락된 부분을 정비하였으며,
-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 확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」 등 관계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 조문을 신설하여 관계 법령을 근거로 위탁해 온 체육시설의 위탁 근거를 분명히 하고,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으로,
-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공공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